

NEWSLETTER 653

May 3, 2022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유치물품 중 반송방법이 제한된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발생 가능한 가산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가산세율〉

기준	가산세율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2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0.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5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1%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8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1.5%
이외의 경우	과세가격의 2%

※ 상기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II. 부과대상 품목

공고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인 아래 품목에 대해 수입 및 반송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기타(칩용)	0701.90.0000	2022.05.01. ~ 2022.11.30.
희가스(rare gas) 기타	네온	2804.29.2000	2022.04.27. ~ 2022.12.31.
	크립톤	2804.29-3000	2022.04.27. ~ 2022.12.31.
	크세논(제논)	2804.29-4000	2022.04.27. ~ 2022.12.31.

알루미늄 합금	자동차 부품 제조용 캐스팅 열로이 (casting alloy)	7601.20-1000	2022.04.27. ~ 2022.12.31.
알루미늄의 판·시트·스트립 (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 는 것으로 한정)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기타(이차전지 양극 집전체 제조용)	7606.11-9000	2022.04.27. ~ 2022.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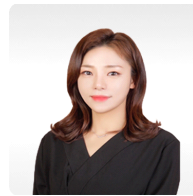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2-42호)

| Contact



김동주 관세사
T 032-742-8250
E djkim@esein.co.kr



전소연 관세사
T 02-6011-3101
E syjeon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